

의안번호	제492호
의결 연월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6년 10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자 및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조례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(안 제23조) 삭제
상위법령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(제23조)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8장 벌칙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23조 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과태 <u>료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도 지사가 부과·징수하며, 필요사항 은 도지사가 정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소비자기본법

제86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
2.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
3.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
4.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·출입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,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
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